

KR T-01010

Rev.1, 24. December 2014



총 칙



2014. 12. 24



한국철도시설공단

목 차

1. 목적	1
2. 적용범위	1
3. 구성	1
4. 용어의 정의	2
5. 관련법령 및 기준	3
RECORD HISTORY	4

1. 목적

본 ‘철도설계지침 및 편람’(이하 ‘지침’이라 한다.)은 「철도건설법」 제 19조 및 「철도설계기준(연계교통시설편)」에 따라 철도역에서 철도와 철도,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(1) 고속철도 · 일반철도 · 광역철도 역에 대해 적용한다.
- (2) 철도역의 입지 및 배치, 역전 광장의 활용과 접근교통수단 및 시설, 연계교통 정보시설 등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전반에 적용하도록 한다.
- (3) 부지 여건이나 교통 여건상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(4) 이 지침은 철도 신설역 또는 개량역에 적용하되 개량역의 경우 지역여건상 본 지침 적용이 어려운 경우 환승저항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수 있다.
- (5)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.

표 1. 적용범위의 주요 내용

구분	내용
철도역 입지 및 배치	- 철도역 입지의 기본 원칙과 고려사항 - 역사 및 역전 광장 배치 시 고려사항 등
연계교통시설 설치	- 연계교통시설 설치 기준 및 고려사항 - 철도역 등급 및 평가기준 등
접근교통시설 배치	- 접근교통시설 배치 기본 방향 및 고려사항 - 접근교통시설 배치계획 및 거리산정 기준
역사 내 이동편의성 확보계획역	- 역 형식별 이동편리성 확보방안 등
역 입지 및 형태별 연계교통시설 모델	- 연계교통시설 모델 분류 - 역 입지 및 형태를 고려한 연계교통모델 제시

3. 구성

이 지침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제 1장 총칙
 - ① KR T-01010 총칙
- (2) 제 2장 고속·일반철도역의 연계교통시설계획
 - ① KR T-02010 역 입지 및 배치계획
 - ② KR T-02020 연계교통시설 설치 기준
 - ③ KR T-02030 접근교통시설 배치계획



- ④ KR T-02040 역사 내 이동편의성 확보계획
 - ⑤ KR T-02050 역 입지 및 형태별 연계교통시설 모델
- (3)제 3장 광역철도역의 연계교통시설 계획
- ① KR T-03010 광역철도역의 연계교통시설 계획 및 설치기준

4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(1) “역”이란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,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.
- (2) “교통연계” 또는 “연계”란 여객과 화물이 임의의 기·종점간 이동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수단 내 서로 다른 위계(位階)를 가지는 시설 또는 노선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시설, 수단, 운영 등으로 두 지점 사이를 단절 없이 이용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.
- (3) “연계교통시설”이란 통행의 대상이 되는 기·종점간의 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시설, 교통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, 접근교통시설, 접근교통 편의시설, 연계교통정보시설을 포함한다.
 - ① “접근교통시설”이란 도시·광역철도역, 버스, 택시, 승용차, 자전거, 렌트카 등의 진·출입, 대기, 주·정차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.
 - ② “접근교통 편의시설”이란 역과 접근교통시설간의 보행자 이동통로 캐노피, 승객 대기소(쉼터) 등을 말한다.
 - ③ “연계교통정보시설”이란 철도이용자에게 철도 및 철도와 연계된 다른 교통수단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가변정보판, 안내표지판, 키오스크(Kiosk) 등 대중교통(버스, 도시철도, 광역철도, BRT 등)안내시스템 등을 말한다.
- (4) “역 광장”이란 철도역 앞에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,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도, 차도, 택시정류장, 버스정류장, 주차시설, 휴식시설 등을 설치한 광장을 말한다.
- (5) “환승저항”이란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, 환승 보행동선을 구성하는 내·외부 보행거리, 계단, 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물리적 시설 등 이용자가 환승 시 불편을 느끼는 요소를 말한다.
- (6) “환승센터”란 철도·지하철·버스·택시·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을 말한다.
- (7) “LOS(Level of Service)”란 교통수단간 환승거리, 보행교통류율 및 점유면적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상태를 말한다.
- (8) “도시 외곽지역”이란 도시의 원도심, 부도심, 신도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상업, 업무, 행정 등 도시의 중심기능이 소재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,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.

- (9) “배후지역 규모”는 철도역이 입지한 시·군을 말한다. 다만, 철도역이 2개 이상의 시·군의 경계에 입지하거나 특정 시·군의 관문 역으로 건설되었을 경우 별도로 배후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.

5. 관련 법령 및 기준

(1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지침을 포함하여 교통·도시·건축 등 연계교통시설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. 다른 법령 및 기준(외국의 법령 및 기준 포함)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- ① 「주차장법」
- ②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
- ③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
- ④ 「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- ⑤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- ⑥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」
- ⑦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
- ⑧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
- ⑨ 「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
- ⑩ 「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」
- ⑪ 「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」
- ⑫ 「철도설계기준」
- ⑬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」
- ⑭ 「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
- ⑮ 「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지침」
- ⑯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-free) 인증제도 시행지침」
- ⑰ 「연계교통체계지침」
- ⑱ 「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」



RECORD HISTORY

Rev.0('13.11.29) 『철도설계기준(연계교통시설편)』이 제정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979호)되어 하위 지침이 필요함에 따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·환승교통체계 및 역 입지, 역사형태 등을 반영한 『철도설계지침 및 편람(연계교통시설편)』 마련

Rev.1('14.12.24) 기존 고속·일반철도역의 연계교통시설 설계기준에 광역철도역의 설계기준을 추가 반영하여 『철도설계기준(연계교통시설편)』이 개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84호)됨에 따라 하위 지침인 『철도설계지침 및 편람(연계교통시설편)』 개정